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14582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과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145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14584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